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0
----------	------

제출년월일 : 2010. 8. 1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4.1.공포, 2009.7.2.시행)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과 아울러
-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광고 절차를 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주요골자

-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
-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례 규정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도로명주소법 제4조, 제8조의4,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0조, 제12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 2010. 6.16 ~ 7. 5.(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 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지방공단
2.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 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표시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방법) 시장은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전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새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소관 실·과		도시디자인과
입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새주소담당 장광영
자	담당자 성명·전화	박대길 (행정 263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 등 표기</u>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 제 ></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로명주소법</u>」 및 「<u>도로명주소법 시행령</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u>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u>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도로명의 변경</u></p>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 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 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 	<p style="text-align: center;"><u>< 삭 제 ></u></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 제 ></u></p> <p>※ 시행령 제7조의 3으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하 같다)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삭 제 > ※ 시행령 제7조의 3으로 이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날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산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안산시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현현, 재정·변경추진 사유	

현 행	개 정 안
<p>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 수 및 주소사용자 협회</p> <p>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p> <p>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 의 의견</p> <p>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나고 인정하 는 사항</p> <p>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 (변경하기로 된 경우에 한한다) 등 을 시보·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 다.</p> <p>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 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 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고한 날 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 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보·시홈페 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 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 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회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 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p> <p>⑦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p>	

현 행	개 정 안
<p>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설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삭제 > ※ 법 제8조의4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시행규칙)으로 이관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 길이는 예외로 한다)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 삭제 > ※ 법 제8조의4 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시행규칙)으로 이관

현 행	개 정 안
<p>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 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p> <p>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제작비용의 산정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살게한 경우에는 해당 살게비용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p>
<p>< 신 설 ></p>	
<p>< 신 설 ></p>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p>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p>
<u>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u> <u>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 설 설치)</u> <p>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명 부여신청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건물번호 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적 3,000분의 1 이상) <p>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u>< 삭제 ></u></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제 ></u></p> <p>※ 영 제12조의2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 기간	
4.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 ·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 삭제 ></p> <p>※ 영 제12조의2로 이관</p>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명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 · 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 삭제 >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 행	개 정 안
<p>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u>도로명사업</u>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p><u>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u>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 자료를 <u>도로명사업담당부서</u>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도로명사업담당부서</u>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만,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p> <p><u>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u>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 자료를 <u>도로명주소담당부서</u>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u>도로명주소담당부서</u>의 장은 제1항의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u> 시장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p>※ 영 제10조로 이관</p>
<p><u>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u>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u>안산시 도로명 관리 시스템</u>에 반영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p>※ 법 제8조의3 신설로 <u>도로명주소 대장 규칙</u>(시행규칙)에 반영</p>

현 행	개 정 안
<p>제6장 <u>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u></p> <p>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최근 5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표지판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할 경우의 필요한 전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p>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지방공단 2. 최근 5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p>②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현 행	개 정 안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 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설에 따른 조치 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신 설 >	<u>③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설되었거나 훼손·망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설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 삭제 >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시장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	제11조(광고의 표시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

현 행	개 정 안
<p>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시보·시호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 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및 제2항의 제출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보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산시 세수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p>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p>③~⑤ < 삭제 > ※ 영 제18조로 이관</p>

현 행	개 정 안
<p><u>기준으로 광고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상정하여야 한다.</u></p> <p>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p> <p>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p> <p>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조의 적합성</p> <p>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p> <p>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부여기준은 안산시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⑤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안산시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보·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 광고사업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p> <p>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보집방법, 개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보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하</p> <p>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보집방법, 개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보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 <u>21</u> 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u>13</u> 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u>8</u> 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u>< 삭제 ></u>
제 <u>22</u> 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시장은 법 제 <u>17</u> 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u>14</u> 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 <u>17</u> 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 신설 ></u>	제 <u>15</u> 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방법) 시장은 법 제 <u>18</u> 조제 <u>2</u> 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u>23</u> 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 <u>22</u> 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u>16</u> 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 <u>22</u> 조에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	1. 각종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현 행	개 정 안
<p>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의 설치</p> <p>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p> <p>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p> <p>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p> <p>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p> <p>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p> <p>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9장 안산시새주소위원회 등</p> <p>제2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명의 부여 · 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지 · 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 삭제 ></p> <p>< 삭제 ></p>
제25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p>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사업과 관계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의견을 갖춘자 	<p>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의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 이 관 ></p> <p>※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 ①항으로 이 관</p>
<p>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삼 체 ></p> <p>※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0조로 이 관</p>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5조3항, 제28조 문항 합침</p>	<p>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사망, 짓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p>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p>
<p>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며</p>	<p>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삭 제 ></p>

현 행	개 정 안
<u>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p>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 본인의 사임을 위함 경우 ②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③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고 판단될 경우 ④ 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 이 관 ></p> <p>*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26조를 이 관</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8조로 이관</p>
<p>제2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로명 사업 담당과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p>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미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미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 삭 제 ></p>
<p>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칙</p>	<p>부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로 행한 것으로 본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새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p>

현 행	개 정 안
(3)(나쁜 조례의 폐지) 안산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삭제 >